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10277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이한동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성, 담당변호사 정재현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1. 9. 30. 김해시 C 소재 사업장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D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 사업장에서 세차, 선팅, 광택, 자동차용품 판매, 블랙박스 등 기기설치, 카라반 작업 등의 영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1. 18. 피고로부터 위 사업 관련한 유형, 무형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고 권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원은 2022. 2. 3.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사업을 E과 동업하였고, E은 2022. 1.경 위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며 2021년 10월과 11월 매출자료로 원고에게 갑 제2호증의 1, 2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자료를 교부하며 '위 자료에는 카라반 작업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카라반 매출을 합하면 매출액은 위 자료에 기재된 것보다 1,000만 원 가량 추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매출자료에는 이미 카라반 매출이 포함된 상태였다. 피고는 그 외 현금매출도 허위로 기재하여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을 E과 동업하였고, 이 사건 사업 중 홍보블로그 아이디와 F(가죽시트 제작업체)의 가맹점 명의를 모두 E의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E은 홍보블로그와 F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중 500~1,000만 원 정도를 포기할 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고지하거나 동업자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의 행위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와 E은 위 사업을 동업하며 “D 일일판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각 일자별 시공내역과 고객명을 기재

하고 매출액을 현금판매와 카

드판매로 나누어 매출표를 기재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2021년 10월과 11월의 매출자료로 갑 제2호증의 1, 2를 교부하였고, 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과 11월의 매출합계는 아래 표 순번 1과

같다(이하 ‘제1 매출표’라 한다). 한편 피고와 위 사업을 동업했던 E은 정산을 위하여 매달 매출표를 저장하여 가지고 있었는데(갑 제3호증의 1, 2), E이 가지고 있던 매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의

매출합계는 아래 표 순번 2와 같다(이하 ‘제2 매출표’라 한다). 피고가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교부한 제1 매출표와 E이 위 사업장의 컴퓨터에서 저장하여 가지고 있던 제2 매출표는 현금 부분에서 각 3,140,000원과 5,870,000원의 차이가 있다(상세 내역은 별지 표 참조).

[제1 매출표와 제2 매출표에 따른 각 매출액과 차액]

순번	월 매출액	2021년 10월			2021년 11월		
		현금매출액	카드매출액	합계	현금매출액	카드 매출액	합계
1(갑 제2호증, 피고)		30,520,500	5,424,900	35,945,400	39,017,100	3,229,800	42,246,900
2(갑 제3호증, E)		27,380,500	5,424,900	32,805,400	33,147,100	3,229,800	36,376,900
차액 (=순번1-순번2)		3,140,000	0	3,140,000	5,870,000	0	5,870,000

3)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매출표를 제시하며 ‘카라반 작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카라반 매출이

포함되면 이보다 1,000만 원 가량 추가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매출표에는 이미 카라반 매출이

모두 포함된 상태였다(10월과 11월 합계 23,13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이 제2 매출표를 저장할 당시에는 ‘카라반’으로 기재되어 있던 매출표의 18개 항목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제1 매출표에는 모두 다른 항목으로 변경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 바, 기재방식을 바꾸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는 위 사업을 E과 동업하였고, 이 사건 사업 중 F(가죽시트 제작업체)의 가맹점 명의를 E의 것이었으며 E은 위 사업에서 탈퇴하며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사업장의 입구에는 여전히 ‘F 김해 관동로점’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갑 제9호증).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F 가맹점 명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것이라고 고지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원고는 F 영업부분도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다룬다), 피고는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유형, 무형의 모든 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바, 적어도 양수인인 원고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 사업에 최근까지도 동업자가 있었으며 위 가맹점 명의를 동업자의 것이어서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했어야 한다(위 가맹점의 간판이 사업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로서는 위 가맹점 부분도 당연히 위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굳이 위 부분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5)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22. 1.경의 매출액은 대략 2,000만 원 정도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비수기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겹쳐 매출액이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출액은 피고가 작성한 제1 매출표에 따르면 2021년 10월과 11월의 평균매출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증인 E의 증언에 따르면, 동업기간 동안 카라반 작업은 전부 E이 하였고, 피고는 E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E이 탈퇴한 후로는 카라반 작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며(피고는 위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 않다), E 명의로 되어 있던 F 가맹계약은 E이 동업에서 탈퇴하며 해지되었다. 피고로서는 E이 탈퇴한 이후 위 사업장에서 카라반 작업과 F 시트 작업 등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위 사업을 계속하였더라도 예전과 같은 매출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위 사업을 양도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현금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카라반 매출이 별도로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동업자의 존재로 인해 양도가 어려운 목적물이 있다는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계약은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2. 16. 취소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취소 주장을 인정하므로, 해제주장과 착오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별지

[표1: 월 매출액 비교(2021년 10월)]

구분 10월	가. 갑 제2-1호증(피고)			나. 갑 제3-1호증(E)			다. 차액지 (=가③-나③)
	① 현금	② 카드	③ 합계	① 현금	② 카드	③ 합계	
1	1,210,000	63,500	1,273,500	410,000	63,500	473,500	800,000
2	1,115,000	137,000	1,252,000	195,000	137,000	332,000	920,000
3	329,800	625,000	954,800	329,800	625,000	954,800	-
4	606,500	538,000	1,144,500	406,500	538,000	944,500	200,000
5	485,000	100,600	585,600	485,000	100,600	585,600	
6	700,000	402,500	1,102,500	700,000	402,500	1,102,500	
7	2,902,000	190,000	3,092,000	2,902,000	190,000	3,092,000	
8	938,500	210,000	1,148,500	738,500	210,000	948,500	200,000
9	1,152,000	168,000	1,320,000	1,152,000	168,000	1,320,000	
10	825,000	272,500	1,097,500	825,000	272,500	1,097,500	
11	880,500	399,500	1,280,000	260,500	399,500	660,000	620,000
12	43,500	127,900	171,400	43,500	127,900	171,400	
13	550,000	35,000	585,000	550,000	35,000	585,000	
14	936,000		936,000	936,000		936,000	
15	985,000		985,000	785,000		785,000	200,000
16		407,900	407,900		407,900	407,900	
17	926,000		926,000	926,000		926,000	
18	1,035,500	64,500	1,100,000	1,035,500	64,500	1,100,000	
19	878,400		878,400	878,400		878,400	
20	1,795,000	38,500	1,833,500	1,795,000	38,500	1,833,500	
21	1,365,000		1,365,000	1,365,000		1,365,000	
22	2,119,000	38,500	2,157,500	2,119,000	38,500	2,157,500	
23	1,069,800	230,500	1,300,300	1,069,800	230,500	1,300,300	
24	899,000	183,300	1,082,300	899,000	183,300	1,082,300	
25	1,688,000	297,000	1,985,000	1,688,000	297,000	1,985,000	
26	1,140,000	193,800	1,333,800	1,140,000	193,800	1,333,800	
27	1,120,000	55,000	1,175,000	1,120,000	55,000	1,175,000	
28	712,500		712,500	512,500		512,500	200,000
29	470,500	220,000	690,500	470,500	220,000	690,500	
30	543,000	32,000	575,000	543,000	32,000	575,000	
31	1,100,000	394,400	1,494,400	1,100,000	394,400	1,494,400	
합계	30,520,500	5,424,900	35,945,400	27,380,500	5,424,900	32,805,400	3,140,000

1) 갑 제2-1호증과 갑 제3-1호증에서 카드 매출액의 1일 매출액과 월 합계는 동일하므로 차액은 현금매출액에서 발생하였다(11월도 같다).

[표2: 월 매출액 비교(2021년 11월)]

구분 11월	가. 갑 2-2호종(피고)			나. 갑 제3-2호종(피)			다. 차액 (=가③-나③)
	① 현금	② 카드	③ 합계	① 현금	② 카드	③ 합계	
1	1,255,000		1,255,000	1,255,000		1,255,000	
2	660,000	75,000	735,000	60,000	75,000	135,000	600,000
3	860,000	156,400	1,016,400	140,000	156,400	296,400	720,000
4	4,085,000		4,085,000	4,085,000		4,085,000	
5	470,000		470,000	470,000		470,000	
6	1,699,000		1,699,000	1,699,000		1,699,000	
7	1,397,000		1,397,000	1,397,000		1,397,000	
8	1,750,000		1,750,000	1,000,000		1,000,000	750,000
9	180,000	178,000	358,000	180,000	178,000	358,000	
10	470,000	77,000	547,000	470,000	77,000	547,000	
11	533,000	499,000	1,032,000	433,000	499,000	932,000	100,000
12	479,000		479,000	479,000		479,000	
13	610,500	14,000	624,500	610,500	14,000	624,500	
14	3,935,900	405,000	4,340,900	3,935,900	405,000	4,340,900	
15	55,000		55,000	55,000		55,000	
16	700,000	420,000	1,120,000	700,000	420,000	1,120,000	
17	440,000	10,000	450,000	440,000	10,000	450,000	
18	6,370,000	10,000	6,380,000	6,270,000	10,000	6,280,000	100,000
19	505,000		505,000	105,000		105,000	400,000
20	1,769,500	258,900	2,028,400	1,769,500	258,900	2,028,400	
21	539,500	430,000	969,500	539,500	430,000	969,500	
22	100,000	165,000	265,000	100,000	165,000	265,000	
23	810,000	400,000	1,210,000	810,000	400,000	1,210,000	
24	185,000	21,500	206,500	185,000	21,500	206,500	
25	800,000	110,000	910,000	800,000	110,000	910,000	
26	2,587,000		2,587,000	2,587,000		2,587,000	
27	1,083,700		1,083,700	1,083,700		1,083,700	
28	630,000		630,000	630,000		630,000	
29	3,507,000		3,507,000	507,000		507,000	3,000,000
30	551,000		551,000	351,000		351,000	200,000
합계	39,017,100	3,229,800	42,246,900	33,147,100	3,229,800	36,376,900	5,870,000

